

의안번호	제 41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0월 일 (제295회)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 성 옥 의원
발의연월일	2010년 9월 일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	----

발의연월일 : 2010년 9월 일

발 의 자 : 윤성옥 의원

찬 성 자 : 정 현 · 김희수 · 황규철 · 김봉희 ·
박문희 · 김종필 · 김도경

1. 제안 이유

-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5. 예산조치 : 2010년 4백만원 예산편성 됨(도비-유지관리비)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87번지길 10-2(율량동 877)에 둔다.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생활필수품(단, 생활필수품의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4. 비교 전시·판매를 위한 타 시·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단,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7번지에 둔다.</p>	<p>제2조(위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87번지길 10-2(율량동 877)에 둔다.</p>
<p>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제4조(전시·판매품목) -----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최소한의 생필품 다만,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p>	<p>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생활필수품(단, 생활필수품의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p>
<p>4. 비교 전시 판매를 위한 타 시·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 다만,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함.</p>	<p>4. 비교 전시 판매를 위한 타 시·도 및 외국의 농어촌 특산품(단,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